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포함 등〉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1. 한국광해광업공단 재무현황	8
2.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직접투자사업 현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1.
3. 회부연월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등 공단은 기존보다 사업범위가 축소되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이행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에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을 포함하고, ②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처분 근거 및 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조(사업) ①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u>	9. <u>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원의</u> ----- ----- -----
10. <u>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u>	10. ----- <u>관리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u> ----- -----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현행	개정안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 ⑦ (생략)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하고,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을 자산매각 시까지만 유지하기로 하였음¹⁾.

이에 따라 마련된 현행법은 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에서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²⁾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제8조제1항제9호), ②

1)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주요내용

○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 ○ 법정자본금(제4조): 3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조원) ○ 사업범위(제8조) -현행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유지(부칙 제10조제8항) ○ 해외자산계정 설치(제13조):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 분리 ○ 폐광지역지원 재원(강원랜드 주식 및 배당금 등)의 처분 제한(제14조)
--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 2021. 9. 10. 폐지]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2.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와 경영 사업(이하 “광물자원탐사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부칙 제10조제8항), 종전의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물자원탐사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부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³⁾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산 15개 중에서 13개를 처분(매각 또는 청산)하고 2개를 당분간 보유하기로 결정하였음.

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광산물의 비축(備蓄)

4.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5.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6. 광산의 경영

7.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9.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 3. 9. 제정]

부칙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 ⑧ (생략)

[해외자산관리위원회 해외자산 처분 결정]

처분방침 (해외자산수)	사업명	처분사유	비고
당분간 보유(2)	암바토비(니켈)	· 이차전지 핵심광물로 공급망 중요성 · 최근 경영정상화를 통한 흑자전환	5차 (’22.4)
	코브레파나마(동)	· 지속적인 현금수익 창출을 통해 공단의 재무건전성에 기여	6차 (’22.5)
매각(3)	블레오(동)	· 높은 생산원가로 지속적인 적자 기록중 · 갱내생산 부진 및 경영정상화 불투명	7차 (’22.6)
	와이웅(유연탄)	· 개발광산으로 생산을 위한 추가비용 소요 · 탈석탄화 정책부응 및 공단 차입 고려	4차 (’22.3)
	나라브리(유연탄)	· 한국측(포스코 5%, 공단 25%) 공동매각 합의 · 공단은 소지분(25%)으로 공동매각이 이익	
청산(10)	카푸아스 등 10개	· 탐사실패, 생산종료 및 사업성 악화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2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항공우주·드론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수 국가가 광물자원의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에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처분 근거 및 해외자산 전부 매각 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기능을 폐지하도록 하는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이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⁴⁾로 신규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경영 정상화 이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업무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7

4) 자본잠식 규모('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전체 3.8조원 중 해외계정은 6.6조원(총부채 8.6조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현황(참고자료 1) 참고

※ 참고자료

1. 한국광해광업공단 재무현황

(단위: 억 원, 2024년말 기준)

계 정		해외계정						고유계정								구분 회계 조정	합계
대분류		고유사업						고유사업				대행·위탁사업					
중분류		투자사업						투자	자원개발민간지원			광해관리지원					
소분류		호주 법인	캐나다 법인	볼레오	암바 토비	코브레 파나마	기타 해외	기타 국내	융자 사업	비축 사업	광물 산업 지원	광해 사업 지원	폐광 대책 지원	저소득 층지원			
자산	유동 자산	722	64	1,123	1,580	103	44	69	1,317	2,788	237	268	4	5	0	8,324	
	비유동 자산	859	1,116	2,369	1	12,791	107	16,563	2,878	3,671	1,343	1,619	102	146	△3,677	39,888	
	총계	1,581	1,180	3,492	1,581	12,894	151	16,632	4,194	6,459	1,580	1,887	107	151	△3,677	48,212	
부채	유동 부채	601	447	7,913	7,743	3,487	89	1	6	21	94	91	7	8	0	20,508	
	비유동 부채	1,459	3,238	33,352	21,459	6,598	319	270	0	264	1,739	112	65	135	△3,677	65,333	
	총계	2,061	3,685	41,265	29,201	10,084	409	272	6	285	1,833	203	72	143	△3,677	85,841	
자본	자본금	1,280	507	1,825	7,415	2,032	1,517	3	1,740	5,657	1,403	0	0	0	0	23,378	
	기타	△1,760	△3,012	△39,600	△35,034	779	△1,774	16,357	2,448	517	△1,656	1,683	35	8	0	△61,008	
	총계	△480	△2,505	△37,775	△27,619	2,811	△258	16,360	4,188	6,174	△253	1,683	35	8	0	△37,6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 직접투자사업 현황

- 현재 14개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 자산을 보유 중이며, 현 자산에 총 6.58조원을 투자('25.6월말 기준)

* 종료사업 포함 시 약 7.41조원 투자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국 명(광종명)	신고 시기	공단지분 (한국,%)	투자액	회수액	현 황
보유 (2)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니켈)	'06	38.17 (45.82)	26,130	563	STX 신청 구상권 청구 중재 대응
	꼬브레파나마	파나마(동)	'09	10(10)	8,656	3,900	ISDS 국제분쟁 중재절차 진행
매각 (3)	볼레오	멕시코(동)	'08	91.24 (96.59)	28,402	2,073	매각 절차 진행 중
	나라브리	호주(유연탄)	'09	2.5(7.5)	610	690	유력 잠재매수자 선정
	와이웅	호주(유연탄)	'95	82.25 (86.5)	731	245	잠재매수자와 매각 조건 협상
종료 (9)	라푸라푸	필리핀(동)	'02	28(70)	271	424	현지정부 환경복구승인 절차 점검
	서안맥슨	중국(희토류)	'03	49(49)	134	36	공단 지분/채권 중국내 매수자 물색
	장가항	중국(석회석)	'05	49(100)	143	326	공업재료 법인(생석회 가공 공장) 공동매각 추진
	미네르바	호주(유연탄)	'06	4(4)	71	81	공동 매각 불기로 환경복구계획 변경 등 협의
	테기다	니제르(우라늄)	'09	4(4)	171	-	공단 보유 지분에 대한 입찰·개찰 진행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94	8 1/3 (25)	144	-	한국참여자 지분 공동매각 추진
	아데나	호주(유연탄)	'06	4(4)	18	-	공동 매각 불기로 환경복구계획 변경 등 협의
	잔드콥스 드리프트	남아공(희토류)	'11	8.905 (8.905)	295	-	공단 지분 회식에 따른 조기 매각추진 검토
	므쿠주	탄자니아(우라늄)	'12	28(28)	23	-	현지법인인 청산 중
진행사업 소계 (9개국, 14개 사업)					65,800	8,337	
종료사업 소계 (16개국, 33개 사업)					8,271	6,721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합계 (21개국, 47개 사업)					74,071	15,0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